

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 운영 내규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대신대학교 상담영어학부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이에 맞는 인재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상담영어학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이를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육목표, 인재상, 전공능력)

- ㉠ 교육목표: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상담전문가와 영어전문가 양성
- ㉡ 인재상: 창조적 전문인, 경건한 신앙인, 글로벌 봉사인
- ㉢ 전공능력: 전공지식활용(융합)역량
 - 창의적 · 비판적 사고역량
 - 기독교중심성찰 및 자기계발역량
 -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상담연구역량
 - 글로벌소통능력
 - 다문화공존을 위한 영어구사력역량

제3조 (적용 범위) 이 내규는 대신대학교 제 규정의 범위에서 적용되며,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담영어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.

제4조 (상담영어학부 전공교육과정 연구위원회)

- ① 상담영어학부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. 위원회는 상담영어학부 교수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와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1. 교육목적, 교육목표, 전공능력, 취업 및 진로탐색 등에 관한 연구
 - 2.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
 - 3.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성과 환류 방안에 관한 연구
- ③ 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범위 및 임기는 학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

제5조 (교육과정)

- ① 교육과정은 전공능력을 균형있게 제고하여 상담영어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- ② 교육과정은 다양한 상담영어학부 분야별 학습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과정의 개편은 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담영어학부 교수회의,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 (취업 및 진로탐색)

-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고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

② 상담영어학부의 교수는 학생들의 선호 진로 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③ 상담영어학부의 전공능력을 반영한 대표 진로와 핵심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표진로:

상담심리전공: 상담전문가, 각종 교육현장에서의 상담 및 교육

영어전공: 사교육현장의 영어교사, 영어관련 회사 및 공기업

2. 핵심직무:

상담심리전공: 상담 및 관련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, (상담)지식 및 기술 활용

영어전공: 각종 영어교육, 교육기획, 무역 및 비즈니스행정

제7조 (졸업논문 및 대체)

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여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 제출 이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㉠ 졸업시험

㉡ 상담영어학부 교육목표에 부합한 과제 및 자격
(상담영어학부 교수회의에서 정함)

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졸업이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③ 졸업논문 면제 요건

㉢ 상담영어학부 교육에 부합된 국가 또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상담영어학부 교수회의의 심사를 통해 대체 인정 가능

㉣ 상담영어학부 및 대학 교육에 부합한 기관·단체에 취업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상담영어학부 교수회의의 심사를 통해 대체 인정 가능. 단,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적용된 기관·단체이어야 하며, 기존 직장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
제8조 (평가 및 환류)

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고 상담영어학부 전공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환류한다.

② 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전공 교육과정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다.

㉠ 전공 교과목의 성과 평가

㉡ 졸업생 진로 평가

㉢ 그 외 상담영어학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

③ 상담영어학부 교수회의에서 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운영개선안을

검토하고 전공 교육과정 편성계획에 반영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.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의 개정과 폐지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